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2021가합549034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웅빈 담당변호사 이지수

피고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림 담당변호사 임유선, 신정혜

변론 종결2023. 10. 18.

판결 선고2023. 12. 20.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3.부터 2021. 7.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2021. 6. 1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6. 21. 접수 제1311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2004. 1. 설립되어 건축자재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2006. 3. 11.부터 2021. 6. 18.까지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주요 건설사의 타일 납품 및 대금 청구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다.

2) 피고 B과 피고 C은 2004. 3. 23.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생활을 유지하다가 2008. 3. 28. 협의이혼신고를 마쳤고, 다시 2011. 1. 31.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다.

나. 피고 B의 업무상 배임행위와 형사판결

1) 피고 B은 원고 회사에서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2. 11. 22.경부터 2021. 6. 3.경까지 거래처로부터 타일물품을 발주 받지 않았는데도 이에 공급할 타일물품을 유통업체로부터 매입한 것처럼 해당 유통업체 사용 계좌에 물품대금을 입금한 후 그 중 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 B이 개인적으로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080,077,8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원고에게 1,188,085,592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범죄사실로 징역 4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8. 8. 선고 2022고합439 판결,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B이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및 이 사건 증여

1) 피고들은 2021. 6. 22.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호협2013호로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였다.

2)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1. 6. 15.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형사판결에서 유죄가 인정된 피고 B의 업무상 배임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1,188,085,592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아가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손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원고가 명시적으로 일부청구하는 700,000,000원을 초과함이 분명하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명시적 일부청구금액인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1. 6.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1. 7. 1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증여는 피고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들 이 사건 증여는 2017. 6. 12.자 각서 및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의한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은 명의만 피고 B의 명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모두 피고 C의 자금으로 마련된 점 등 피고들의 혼인기간에 따른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피고 C의 기여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는 재산분할로서 상당성을 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피고들은 이 사건 증여가 2021. 6. 3.경 이루어져 그 이후에 발생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증여는 피고 B의 불법행위일 이후인 2021. 6. 15. 이루어졌다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증여가 그 전에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사해행위 및 채무자의 사해의사 가) 이 사건 증여의 성격

피고들이 2021. 6. 22.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고, 그 이전인 2021. 6. 15. 이 사건 증여가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그 뒤 피고들이 이혼의사에 관한 확인을 받아 협의이혼신고를 마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실제 피고들이 이혼했다고 볼 다른 증거도 없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 협의는 협의 또는 합의의 명칭이 반드시 '재산분할'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시기가 반드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할 무렵이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나아가 부동산의 증여가 협의이혼 신고와 시간적 간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의 취지 참조). 그러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만 했을 뿐 실제로 협의이혼 신고가 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를 피고들의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증여의 실질이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이 아님을 전제로 판단한다.

나) 사해행위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 당시 피고 B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2021. 4. 실거래가는 1,090,000,000원인 사실(이 사건 증여일인 2021. 6. 15.에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된다), 소극재산으로는 앞서 본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비롯하여 주식회사 D에 대한 406,800,000원, E에 대한 300,000,000원의 각 채무1)

등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다액의 채무가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피고들의 사해의사

앞서 본 불법행위의 내용과 기간, 이 사건 증여로써 이전되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피고 B의 재산

중 이 사건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종합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심화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C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C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 C은 이 사건 증여 당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부담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협의이혼에 따른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았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21. 6. 16. 피고 B에게 관련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을 추궁하였고, 피고 B이 그 자리에서 이를 인정하였는데, 그 직전인 2021. 6. 15.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지고, 2021. 6. 22.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관련 형사판결에서 피고 B에게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늦어도 이 사건 증여 시점에는 피고 C이 피고 B의 업무상 배임 사실 및 그 대략적인 범행 시기 등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번복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 김경수

판사 김도형

판사 신진경

별지

1) 실제 피담보채무를 인정할 증거는 제출되지 않아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하였다.